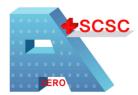
석면조사 결과보고서



배재대학교서재필관 석면조사

2014. 02.



❤scsc 석면안전관리지원센타 |주|

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1356 201호

TEL: 1661-5404 FAX: 042)524-1789

목 차

- 1. 석면조사 종합결과표
- 2. 석면조사 개요
- 3. 석면함유자재 균질부분 함유면적 집계표
- 4.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
- 5. 시료분석결과서
- 6. 조사기관 지정서 사본

1.석면조사 종합 결과표

1.조사현황

₩ .Τ.	건축물소재지	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0-44				
현장	의뢰처(소유주)	배재대학교		TEL	042-520-5114	
조사대상구분	☑ 건축물	☑ 설비[파이프,보온재,개스킷,패킹재,실링자		:킷,패킹재,실링재 등]		
용도 및 구조	■ 주용도 :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■ 구조 :철근콘크리트구조					
조사목적	<u>석</u> 면안전관리법에					
조사책임자	박준근 - 대기환경기사 93202130466Z		건물연면적			2,316.24m²
조사자	박기현 - k.s13-87-0002호		T LIGHT		0.010.04*	
분석자	안은지 - 분석학사	조사연면적 2,316.24㎡			2,310.24111	

2.석면조사결과

종류	석면함유의심자재	분석결과	석면종류 및 함유량	시료수	석면함유면적
천장재	석고보드	불검출		1	
선경제	텍스	검출 🖯	백석면 4%	9	1555.38m²
바닥재	비닐계타일	불검출	_	4	
배관재	보온재	불검출	-	3	
	1555,38 m²				scsc

-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,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에 의하여 석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2014 년 02월 11일



석면안전관리지원센타 주

노동부2012-120004호 석면조사기관



2.석면조사 개요

가. 조사개요

배재대학교 서재필관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 2, 석면안전관리법 제5장 21조 에 근거하여 현장조사와 시료채취 및 분석을 하였습니다.

나. 조사목적

- ①『석면안전관리법』시행으로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 건축물 대하여 석면 사용실태를 조사
- ② 조사된 석면사용 실태 및 관리현황을 근거로 석면지도 작성하고 석면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으로 석면을 관리하고 석면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보호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기 위함.

다. 조사방법

석면조사는 "산업안전보건법" 시행규칙 제 80조의 4에 따라

- ① 건축도면, 설비제작 도면 또는 사용자재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함유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의 현황을 참고하여 육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- ②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 중에서 석면함유 의심물질에 대하여는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을 구분하여 "고용 노동부 고시"제2012-9호 [석면조사 및 안정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]에 따라 시료를 채취 및 분석조사를 하였습니다.

[참고]

- ① 기관석면조사 이후 건축물이나 설비의 유지, 보수 등으로 물질이나 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 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
- ② 기관석면조사실행 이후 해당 건축물의 공사(해체, 철거, 보수, 등)진행전 또는 진행 중에 석면조사당시 구조적으로 조사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구역이나 노출되지 않은 부분(예> 2.3중 덧시공)에서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자재가 발견되는 경우 석면안전관리지원센타(주) ☎1661-5404로 통보하여, 재조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.

라. 현장사진



지하1층 전기실



지하1층 기계실



지하1층 사무실



1층 101호 **천장재-석면검출 건축자재(텍스)



1층 복도 **천장재-석면검출 건축자재(텍스)





3. 석면함유자재 균질부분 함유면적 집계표

구분	석면함유건축자재	석면종류 (함유율)	균질구분	면적	소계	
			1층 천장	366.89		
			2층 천장	366.89		
천장재		백석면 4%		3층 천장	398	1,555.38
	텍스		4층 천장	395.6		
			옥탑계단실 천장	28		
	호 보더라OTIU더고 4 FFF 00 ㎡					

총 석면함유자재면적 1,555.38 ㎡

^{**} 균질지역 구분에 관한 근거 - 고용노동부 고시 2012-9호 제4장 2

^{**} 건축물의 석면면적은 조사자의 실측에 의한 것이며 측정위치 및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.

4.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

■ 『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』제28조 제1항, 『환경부고시 제2012-81호』 "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"에 따라 다음 항목의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합니다.

1.평가

석면함유자재	항목	상세항목	점수
		비산성	1
	물리적 평가	손상상태	1
		석면함유량	1
		진동에 의한 손상가능성	0
	진동,기류,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	기류에 의한 손상가능성	0
텍스	L 0 700 07	누수에 의한 손상가능성	0
	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	유지보수형태	1
	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	유지보수빈도	1
		상주인원 또는 거주자 수	1
	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	구역의 사용빈도	2
		구역의 1일 평균사용시간	2

2.결론

석면함유자재	점수	위해성등급
텍스	10	낮음

■ 관련근거-별첨

5.시료분석결과서

분 석 결 과 서

■고형시료 중 석면 문서발급No : ASC140114-21~37

	의뢰처 정보							
의뢰처		배재대학교 ▶scsc			TEL	042-520-5114		
	용역명	배재대학교 서	서재필관 석면조사					
	시료채취장소	대전광역시 서	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0-44					
	*scsc	분 석 결 과			분석연구	원: 안 은 지		
시료 번호	채취위치	자재종류	분석 석면	결과 비석면설	4.0.	법적기준 (중량대비1%이하)		
No.1	옥탑 계단실 천장	텍스	백석면(Chrysotile) 4 %		3 71	석면 1% 초과		
No.2	3층 인터넷카페 천장	석고보드	불검출			-		
No.3	3층 복도 천장	텍스	백석면(Chrysotile) 4 %			석면 1% 초과		
No.4	3층 304호 천장	텍스	백석면(Chrysotile) 4 %			석면 1% 초과		
No.5	4층 복도 천장	텍스	백석면(Chrysotile) - 4 %			석면 1% 초과		
No.6	4층 408호 천장	텍스	백석면(Chrysotile) 4 %			석면 1% 초과		
No.7	3층 복도 바닥	비닐계타일	불 검 출		→ scsc	_		
No.8	4층 복도 바닥	비닐계타일	불 검 출		- RE-	-		
No.9	2층 206호 천장	텍스	백석면(Chrysotile) 4 %			석면 1% 초과		
No.10	2층 복도 천장	텍스	백석면(Chrysotile) - 4 %			석면 1% 초과		
No.11	2층 204호 바닥	비닐계타일	불 검 출			-		
No.12	1층 103호 천장	텍스	백석면(Chrysotile) 4 %			석면 1% 초과		
No.13	1층 복도 천장	텍스	백석면(Chrysotile) 4 %			석면 1% 초과		
No.14	1층 103호 바닥	비닐계타일	불 검 출			_		
No.15	지하 기계실 배관	보온재	불 검 출			-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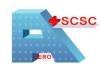
시료 번호	채취위치	자재종류	분석 석면	결과 비석면섬유	법적기준 (중량대비1%이하)
No.16	지하 기계실 배관	보온재	불 검 출		-
No.17	지하 기계실 배관	보온재	불 검 출		-

분석방법

편광현미경을 이용한 시야 평가법(PLM)

- 『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 제4조 2항 ,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-9호』





석면안전관리지원센타 | 주



노동부2012-120004호 석면조사기관

6.조사기관 지정서 사본

제2012-120004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변경)

기 관 명	석면안전관리지원센타주식회사			
소 재 지	(301-807)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56 (목동) 201호 (목동) 201호			
대표자성명	송영식			
	총 대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		
지정사항	관 할 지 역 대행(지정) 한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		
	대행(지정) 지역	석면조사		

※ 준수사항

- 1.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지방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2. 석면조사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2. 6. 28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기기